

대구지방법원 2020. 7. 10 선고 2018가단1850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1. 1. 13 선고 2020나314418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0. 7. 10 선고 2018가단18501 판결

전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

담당변호사 조병홍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피고 3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화성

변론 종결 2020. 6. 5.

판결 선고 2020. 7. 10.

주 문

1. 원고에게,가. 피고 B, C, D는 각 6,157,9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. 6. 14.부터,피고 C는 2019. 12. 4.부터, 피고 D는 2019. 6. 13.부터 각 2020. 7. 10.까지는 연 5%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,나. 피고 E는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,157,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6. 13.부터 2020. 7. 1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,다. 피고 F은 2,639,118원, 피고 G, H은 각 1,759,4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2019. 6. 13.부터 각 2020. 7. 1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, C, D는 각 6,157,944원과 각 이에 대한 2018. 7. 25.부터 이 사건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, 피고 E는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,157,944원과 이에 대한 2018. 7. 25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, 피고 F은 2,639,118원과 이에 대한 2018. 7. 25.부터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, 피고 G, H은 각 1,759,412원과 각 이에 대한 2018. 7. 25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J와 K 아반떼 승용 차량(이하 '원고 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, I(2018. 1. 30. 사망, 이하 '망인'이라 한다)는 L 마티즈승용 차량(이하 '피고 차량'이라 한다)의 운전자이다.

나. 망인은 2018. 1. 11. 19:14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M에 있는 N중학교방면에서 다문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 정차중이던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, 계속 진행하여 정차 중이던 O 승용 차량을 순차로 충격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

다.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P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. 1. 30. 사망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8. 5. 10.부터 2018. 7. 24.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30,789,720원을 지급하였다.

라.1)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는,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B, C, D, E가 각 1/5지분, 피고 F이 3/35지분, 피고 G, H이 각 2/35 지분(피고 F은 망인의 형제인 망 Q의 배우자로, 피고 G, H은 망 Q의 자녀로 각 대습상속함)의 비율로 상속하였다.

2) 피고 E는 2019. 3. 5.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91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3, 4, 6호증,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.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사고는, 망인이 피고 차량 운전 중에 동맥류가 파열되어 의식을 잃는 바람에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 고, 원고 차량 운전자 J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원고 차량을 정차한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. 따라서 망인의

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, 망인이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D, E, F, G, H의 주장

이 사건 사고는, 망인의 과실과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, 원고가 망인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다.

3. 판단

가.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, 보험가입자 등에게 위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, 보험회사 등이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나. 살피건대,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, 갑 제5, 10,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, ① 망인은 중앙선을 넘어가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반대 방향 인도 연석을 충격한 후 진행방향 반대 차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고, 계속 진행하여 정차 중이던 O 승용 차량을 순차로 충격한 후 멈춘 사실, ② 망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시속 61km에서 70km 사이의 과속으로 운행한 사실, ③ 망인이 원고 차량과 위 O 차량을 충격할 때까지 속도를 줄였다고 불만한 사정이 없고,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J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켜 두었고,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직선 도로 구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시야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, ⑤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 차량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, 망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운행할 경우 반대 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,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진행한 망인의 단독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다. 그렇다면, 원고는 망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므로, 망인은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.

따라서 원고에게, 망인의 상속인인 ① 피고 B, C, D, E는 각 6,157,944원(=30,789,720원 × 상속지분 1/5) 및 각 이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2019. 6. 1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는 2019. 6.14.부터, 피고 C는 2019. 12. 4.부터, 피고 D, E는 각 2019. 6. 13.부터 위 피고들이 그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. 7. 1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다만, 피고 E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, ② 피고 F은 2,639,118원(= 30,789,720원 × 상속지분3/35, 원 미만 버림. 이하 같다), 피고 G, H은 각 1,759,412원 (= 30,789,720원 × 상속지분 2/35) 및 각 이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2019. 6. 1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각 2019. 6. 13.부터 위 피고들이 그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. 7. 1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[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 반환은 그 법적성격을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하는바,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,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,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.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치료비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망인이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]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이효인